

여야 4당,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추진

민주·정의·평화당, 의총서 만장일치로 추진 바른미래, 4시간 격론 끝 '찬 12·반 11' 가결 25일까지 정개특위·사개특위서 지정 완료키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3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선거제도 개혁안과 검찰 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각 당 의원총회에서 모두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전날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추진했다.

전날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부분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하고 각 당 의총을 거쳐 추진을 받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85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총을 개최한 민주당은 4당 간 합의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뒤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박수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데 대해 당내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별다른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은 공수처에 완전한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 대상 사건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조정을 수용했다.

정의당도 의총에서 합의안을 박수로 만장일치 추진했다. 정의당은 추진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패스트트랙 추진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협조를 촉구했다.

평화당도 의총에서 거수 없이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진했다. 다만 선거

제 개혁에 따른 지역구 축소 문제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었다.

현 선거제 개혁 합의안대로라면 의원 정수 300명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비례대표 의석 수만 늘어나기 때문에 253석인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농촌이나 낙후 지역 등 유권자 수가 적은 지역

은 선거구 범위가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다.

당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이번 패스트트랙 합의의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됐던 바른미래당도 의총에서 4시간의 격론 끝에 추진에 이르렀다.

바른미래당은 의총에서 추진 요건 자체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바른미래당은 추진을 위해서는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합의안을 들고 온 김관영 원내대표는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추진 요건에 대한 투표를 먼저 진행한 뒤 합의문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12표, 반대 11표의 간발의 차로 가결됐다. 당에서 활동 중인 현역 의원 24명 중 박주선 의원을 제외한 23명이 참석했다.

패스트트랙 여부를 둔 갈등 이외에도 공개 여부와 표결 여부 등을 둔 설전도 벌어졌다.

각 당의 추진을 거침에 따라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뉴시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마치고 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카자흐스탄 국립 방문을 마치고 23일(현지시간) 누르술탄 공항에서 환승인사들에 손인사를 하고 있다.

권익위 "국회의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공수처법과 경우 달라"

"공익목적 지역구 민원처리... 부정청탁 예외 조항으로 보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전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서 국회의원을 직접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청탁금지법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23일 해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

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며 "부정청탁 금지 규정과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법에는 장·차관, 군장성, 국회의원, 국정원 고위간부 등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고 법원의 재정신청권을 통한 간접 기소 권한을 인정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에서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구성에서 논란이 됐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회의원이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마치 과거 청탁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법 적용 여부를 놓고 일었던 논란을 연상케 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엔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법안 내에서 국회의원을 직접 기소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청탁금지법 사례와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논란이 됐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결과적으로 청탁금지법에서 빠지면서 국회의원도 예외없이 부정청탁을 금지한 법 조항 적용을 받게된 만큼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대만 국회의원이 지역구 등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라며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해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김광수 의원, 평화당 사무총장 취임 100일

"당 역량 민생·총선 승리에 집중"

지난 1월 14일 민주평화당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김광수 국회 의원(전북 전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3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23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자리에서 "향후 당의 모든 역량을 민생회복과 총선 승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제3지대 등 총선을 앞둔 정계개편 정국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전국 곳곳에 넓고 개혁적인 인물들을 공천할 것이며, 특히 호남에서는 정당경쟁론과 인물론을 내세운 이른바 '양날개 전략'으로 민주당과 정면승부를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이 어려운 시기에 사무총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

아 선거제 개혁, 현장 최고위, 경쟁 최고위 등 현장을 찾아 민심을 듣고 실천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정신했다"며 "특히, 지난 4.3 전주 시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평화당 최명철 후보의 승리를 이끌어 내는 등 당에 자심감과 활력을 불어넣은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 사무처 쇄신과 슬림화를 통해 일하는 정당을 만들고, 시도 당 및 지역위원회 개편대회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내 향후 총선 승리의 토대를 만들어 냈다"며 "민주평화 연구원과 당 정책국을 중심으로 민생정책과 법안 마련에 더욱 집중해 민생정당으로서의 면모도 더욱 부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계파공천이 아닌 일 잘하고 개혁적인 인물, 정치를 변화시킬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조례 제정

최영심 도의원 대표발의... "교통약자 불편 해소 기여할 것"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정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이 통일된 규정에 의거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하며, 2005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된 이후 시군별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함께 교통약자를 연결해주는 시군의 이동지원센터도 설치됐지만 지자체별 상이한 운영기준 및 요금 등으로 인해 지역 간 이동요를 충족할 수 없어 그동안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 운영규정을 통일하고 이를 총괄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조례안이 도의회 최영심의원과 조동용(군산 3)의원 공동발의로 추진돼 19일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통일된 운영규정이 없어, 이번에 전북도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전국 최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영심 의원은 "이동권의 인간의 기본권이지만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은 여전히 지역 간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전화 접수와 배차를 일원화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해 운영규정을 통일시키고 서비스평가와 교육을 통해 도내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향후 조례가 시행되면 전북도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도내 14개 시군의 조례 개정 작업과 협약체결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 준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진성 기자